

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시행

2027년 1월 8일부터

외국인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 됩니다!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(제31조의2)에 따라

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
'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' 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교육 대상

대한민국 내 사업장(사업)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전체 외국인근로자

교육대상 주요 체류자격

단기취업(C4) 특정활동(E7) 계절근로(E8) 사증면제(B1) 단기방문(C3) 유학(D2)
거주(F2) 재외동포(F4) 영주(F5) 구직(D10) 방문동거(F1) 기타(G1)
결혼이민(F6) 관광취업(H1)
그 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

위험도가 낮은 체류자격은 비대상

교수(E1), 회화지도(E2), 연구(E3), 기술지도(E4), 전문직업(E5), 예술흥행(E6)

면제 대상

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취지 및 교육 내용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
(후면 면제 대상 참조)
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·시행규칙 공포 기준 교육 대상 및 면제대상 교육 최종 확인 필요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채용 시 교육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제외
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개정 예정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 기준으로 확인 필요

2026-교육총괄실-898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이수하세요!

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교육을 신청하세요!



교육 방법

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플랫폼에서 온라인 교육(무료) 이수 후 교육수료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.

교육시간 3시간

1.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플랫폼 접속(kosha.step.or.kr)
2.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
3. 온라인 교육 수강 (3시간)
4. 교육수료증 출력·보관

교육 내용

1. 안전의식 함양 및 근로자 권리·의무
2. 보호구 종류·착용
3. 안전보건표지
4. 기본안전수칙
5. 떨어짐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
6. 넘어짐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
7. 끼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
8. 폭염·한파 등 건강장해 예방
9. 화재대피요령 및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

면제 대상

-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
-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에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(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에 한함)
- 선원법, 선박직원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승무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효기간 내에 선원으로 채용되는 경우
- 이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

과태료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 3차 이상 위반 50만원

2026-교육총괄실-898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